

전주지방법원 2022. 8. 31 선고 2021나1118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2. 8. 31 선고 2021나11186 판결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. 9. 28 선고 2020가단2456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조합

피고, 항소인 C

변론종결 2022. 7. 20.

판결선고 2022. 8. 31.

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. 9. 28. 선고 2020가단2456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D 사이에 정읍시 E 전 1,392㎡에 관하여 2020. 8. 7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20. 8. 11. 접수 제222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 법원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않다.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2쪽 16행부터 3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.

『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D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거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D은 당시 위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이에 따라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자신과 체결한 이른바 ‘자기계약’(민법 제124조)으로 보이는데,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D의 무권대리 또는 자기계약으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

주장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한 이상, 피고는 D이 대리하여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후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.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D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(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6다22661 판결 등 참조), D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알고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결국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.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미리, 판사 김범준, 판사 신태광